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도내 다른 시군과 유사하게 지급하여 자긍심을 고양시키고자 함.

○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비결과 정비대상으로 통보되어 개정이 필요한 부분 정비

3. 주요내용

○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변경(안 제4조제1호)

- 수당 인상 : 월7만원 → 월10만원

○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 정비(안 제5조제3항, 제9조)

- 사망위로금 지급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 상위법 준용 규정 삭제
- 수당 환수에 관한 상위법 준용 내용 개정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
○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
○ 입법예고 : 의견 없음(예고기간 : 2018. 9. 27. ~ 2018. 10. 17.)

○ 규제심사 : 해당 없음 〔기획감사실-8816(2018. 11. 2.)〕

○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 〔주민복지과-50663(2018. 9. 7.)〕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기타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

○ 국가에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

현재 경북 도내 10개 시·군이 10만원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예정이며 그 외 기타 상위법에 의거 용어정비 및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타 시·군과의 형평성 및 참전유공자분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